

2016년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사전심의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응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인터넷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응시자격 유무를 미리 확인하고, 더불어 인터넷 접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응시자격 사전심의 일정,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원서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방문하여 『2016년도 하반기 및 201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공고)』 및 『2016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사전심의 안내(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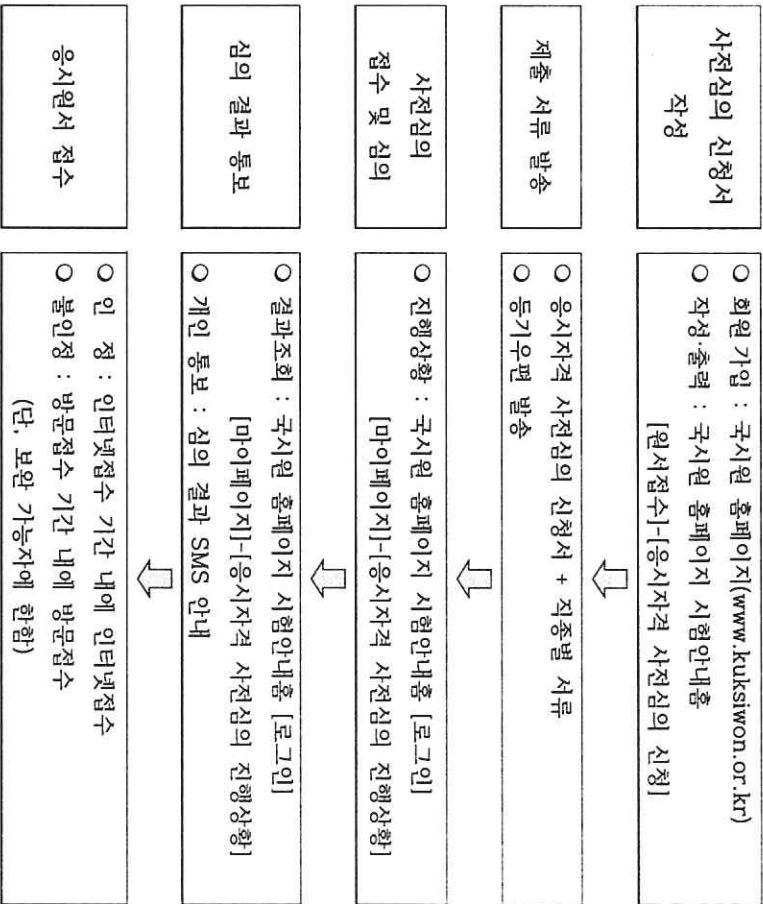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 응시자격 사전심의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전, 응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응시자격 사전심의 결과 응시자격이 인정된 자는 별도의 응시자격 심의절차 없이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하여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사전심의 절차



3 응시자격 사전심의 대상자

구분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 대상자
한약사	■ 한약관련 과목(95학점)을 이수한자 중, 한약사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1997년 이전 입학 또는 편입한 자)
의무기록사	■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대학(학과)에 입학하여 의무기록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40학점)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인정대학 목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의무기록사-시험정보]-응시자격
안경사 (업무경력)	■ 1988년 5월 28일 당시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업무를 행한 자 중, 안경사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영양사	■ [2010년 5월 23일 이전 '인정 대학' 입학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에서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영양사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 영양 관련 18과목 52학점 인정대학 목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영양사]-시험정보-응시자격
위생사 (업무경력)	■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영양사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1급 응급구조사 (업무경력)	■ 위생업무에 1년 또는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위생사 국가 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 2급 응급구조사로써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의지 보조기 기사	■ 의지 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의지 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구분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 대상자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보건교육사 1급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 대학원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건교육 관련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보건교육사 1급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보건교육사 2급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 (예정)한 자 중, 보건교육사 2급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 (예정)한 자 중,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로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1급 언어 재활사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로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2급 언어재활사	■ [2012년 8월 5일 이전 언어재활 관련 학과 입학자]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예정)자 중,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 언어재활 관련 학과 현황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언어재활사]-시험정보-응시자격 (단, 2012년 8월 5일 이전 졸업자는 사전심의 대상자가 아님)
외국대학 졸업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해당 면허를 받은 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 ※ 단, 외국대학인정심사에서 응시자격이 '인정'된 자는 사전 심의 없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함.

4 응시자격 사전심의 일정

가. 접수기간 : 2016. 7. 29.(금) ~ 8. 26(금)
 나. 결과발표 :

대상 직종	발표(예정)
■ 한약사 ■ 안경사(경력) ■ 위생사(경력) ■ 1급 응급구조사(경력) ■ 의지·보조기 기사	9. 9.(금)
■ 외국대학졸업자 ■ 1.2급 언어재활사 ■ 의무기록사	9. 23.(금)
■ 1.2.3급 보건교육사	9. 30.(금)
■ 영양사	1차: 9. 23.(금), 2차: 10. 7.(금)

※ 응시자격 사전심의 결과에 대한 발표는 접수 건수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영양사의 경우, 접수순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발표.

5 준비서류 및 제출

가. 준비서류

제출 서류 명	준비 방법
■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대상 직종)	· 국시원 서식 활용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원서접수]-[응시자격사전심의신청]
■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외국대 졸업자)	· 국시원 서식 활용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해당 직종 선택]-[서식모음]
■ 관련과목 이수(예정)증명서	
■ 업무 종사증명서(확인서)	
■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 2급 보건교육사 자격증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 사본 제출 · 자격증명서 대체 가능(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건의료인 면허 (자격)민원 메뉴)

※ 직종별 준비서류가 상이하므로 5p 직종별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나. 서류 제출

■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와 직종별 제출서류를 국시원으로 우편 제출 (보내실 곳 : (0510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부
 응시자격 사전심의 담당자 앞)

다. 접수 및 결과 확인

■ 홈페이지 조회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자격 사전심의 진행상황]에서 확인/출업예정자는 소속 학과에 문의
 ■ 심의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 개별 통보

6 직종별 제출 서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영양사 등 일부 직종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강신청확인서를 사전심의 시 제출하지 않음.(단, 합격 후 면허발급 신청 시 제출)

※ 간소화 직종 : 영양사, 의무기록사, 2급 언어재활사, 의지보조기기사, 한약사 (직종 별 제출 서류 확인)

- 사전심의 제출서류 간소화 직종은 '관련과목 이수(예정)증명서'만 제출하므로 이수과목명 등 기재사항이 증명서류(성적증명서 등)와 다를 경우 '응시자격 미인정' 또는 '합격취소'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해야함.
- 전체 교과목 사전심의 직종 심의 시 '관련과목 이수(예정)증명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해당 서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응시자격 미인정' 또는 '합격취소')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됨.
-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에 이수과목을 수강신청한 경우 수강신청 과목명을 기재함(수강신청 대기자 포함) 단, 응시자격 인정 후 해당교과목을 미이수 하거나 잘 못 기재한 경우 추후 합격 취소 될 수 있음.
- 서류 제출 시 증명서 하단에 본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후 제출 (성명과 서명이 없는 경우 응시자격 심의대상에서 제외)
- 사전심의를 위한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않고 즉시 반송함.
- 사전심의 신청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 후 면허(자격)신청 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직종별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한약사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단,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 제출 안함)
- ② 한약관련 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 ③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 중 해당자에 한함)
- ④ 성적증명서 1매

○ 의무기록사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단,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 제출 안함)
- ② 의무기록 관련분야 학점 이수(예정)증명서 1매(2003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용)
- ③ 의무기록 관련분야 학점 이수증명서 1매(2003년 3월 이전 졸업자용)

○ 안경사(업무 경력)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 ② 안경업소 업무 종사 확인서 1매

○ 영양사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단,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 제출 안함)
- ②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입학년도에 해당하는 서식)

○ 위생사(업무 경력)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 ② 위생 업무 종사증명서 1매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매

○ 1급 응급구조사(업무 경력)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 ②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매
③ 응급구조사 업무 경력증명서 1매(필요 시 관련 서류 별도 제출 요청)

○ 의제·보조기 기사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단,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 제출 안함)
- ②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 1급 언어재활사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
- ② 졸업(학위수여)증명서 1매
- ③ 본인 인이재활사 자격증 사본 1매
- ④ 인이재활사 업무 경력증명서(국시원 서식) 1매

첨부 1. 언어재활기관 증명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1매

- 본인 언어제할사 종사기간 확인 증명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1매
- 상근 언어제할사 상근여부 확인 증명서류(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상근 언어제할사 자격증 사본)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상근 언어재활사) 1매

○ 2급 언어재활사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단,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 제출 안함)
- ②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1매(2012.8.6. 이후 입학한 자에 한함)
- ③ 입학일자 확인 서류(학적부, 성적증명서) 1매(2012.8.5. 이전 입학한 자에 한함)

○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 취득 후, 보건교육업무 3년 이상 종사자]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
- ②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사본 1매
- ③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1매

- [교과목 이수 + 석(박)사 학위 취득 + 보건의료업무 2년 이상 종사자]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
- ② 석사(박사) 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매
- ③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 ④ 성적증명서 1매
- ⑤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 ⑥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1매
- ⑦ 타 학과 이수(수강신청)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건교육사 2급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단,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 제출 안함)
- ② 졸업(예정)증명서 1매(단,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 제출 안함)
- ③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 ④ 성적증명서 1매
- ⑤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 ⑥ 타 학과 이수(수강신청)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건교육사 3급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단,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 제출 안함)
- ② 졸업(예정)증명서 1매(단,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 제출 안함)
- ③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 ④ 성적증명서 1매
- ⑤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 ⑥ 타 학과 이수(수강신청)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외국대학졸업자

- | | |
|--------------------|-------------|
| ①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 | ② 졸업증명서 1매 |
| ③ 성적증명서 1매 | ④ 면허증 사본 1매 |
|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
- ※ 단, ②·③·④의 서류는 외국 졸업학교 국가의 외교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비가입국의 경우 현지 주재공관장의 영사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영문서류의 경우 번역·공증을 생략함.

7 기타 유의사항

- 졸업예정자의 사전심의 신청은 소속 학과에 문의하여 단체로 신청할 것.
- ※ 영양사, 의무기록사, 보건교육사, 의지·보조기 기사, 2급 언어재활사 국가 시험에 한함.
- 졸업예정자 중, 소속 학과에서 졸업예정자 명단(공문 포함)과 함께 신청할 경우 사전심의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전심의 없이 인터넷 응시 원서 접수는 가능하나, 법률이나 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응시자격이 변경되었다면 사전심의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

○ 과거 응시할 당시 졸업예정자로 응시한 경험이 있는 자는 사전심의 없이 인터넷 접수는 가능하나, 면허교부 신청 시 제출하는 최종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합격자로 인정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사전심의 접수를 하지 못한 자는 방문접수 기간 동안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 자격을 확인 받은 후 접수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1544-4244)으로 문의